

환자들 병원 찾아 삼만리...정부, 이탈 전공의 강경 대응

광주·전남 2차병원 일부 병상 포화...환자들 “어디로 가야 하나” 한숨 보건복지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착수 속 주동자 경찰 고발도 검토

의대원 증원에 반발해 광주·전남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보름째인 5일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의료대란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환자와 가족들은 “광주지역 2차병원들의 병상이 가득 차고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상급병원에서 부족한 의료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대책으로 경증환자 대부분을 2차 병원으로 이동시켜 광주지역 2차병원들의 병상이 점차 차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강경 대응 착수=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5일에도 화순전남대병원과 기동병원 등에서 전공의 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51명에게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확인서가 발송됐고, 조선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02명에 대해 불이행확인서를 전달했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62명, 광주기동병원에서는 30명 전공의가 각각 이탈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불이행확인서를 발송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

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면허정지는 이들 전공의의 모두에게 발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면허정지 통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행정처분과 함께 전공의 집단사직의 주동자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검토해 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고발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비해 호남권 응급의료상황실 등 전국 4개 권역에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남권 응급의료상황실은 광주시 동구 KT 광주센터에 들어서며 현재 막바지 내부 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상황실에서는 중증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질 경우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환자들 병원찾아 삼만리=전공의에 이어 인턴들이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까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상급병원은 수술이 평소 대비 30%대로 줄어들고 있고 입원환자도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은 환자들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환자들은 ‘2차병원에서 의료공백을 모두 메우지 못하고 있다

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년째 신장 투석을 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5일 조선대병원 응급실을 온 박태근(35)씨는 “최근 3주 사이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헤매다 병이 더 도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상급병원과 2차병원을 오가다 2차병원에도 자리가 없다고 해 결국 집에 머물다가 병을 키운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신장이 좋지 않고 당뇨병이 있는 박씨의 모친은 지난달 13일 정강이 뼈가 부러져 조선대병원에서 9일에 수술을 받고 4일 후 퇴원해 겨우 2차병원으로 갔다.

이후 광주지역 2차 병원에서 혈전이 의심돼 중환자실에 있다가 다시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2차병원을 다시 가지 못했다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다.

박씨는 “광주지역 3곳의 2차병원을 수소문 했지만 모두 ‘자리가 없다’며 받아주지 않아 집으로 가야 했다”면서 “오늘 어머니가 동네병원에 투석을 받으려고 갔다가 몸이 좋지 않아 결국 투석도 못하고 구급차에 실려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다시 오게 됐다”고 속상해 했다.

박씨는 “어머니가 다른 합병증까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 후 좀 더 지켜봐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애초 수술후 상급병원에서 투석까지 받고 안정기를 맞아 퇴원했으면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동맹 휴학에 돌입해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광주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위급상황시 긴급 출동에 대비해 의약품과 응급의료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감사과정서 특징인 노출은 사생활 비밀 침해”

인권위, 광산구시설공단에 경고

보안을 설정하지 않아 특징인에 대한 감사 관련 문서를 다른 직원들이 봤다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5일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기관 경고를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문서 보안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A씨

는 “공단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내에 대한 출석요구 공문을 대국민 공개 처리하고, 감사 관련 문서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처리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업무 담당자의 행정미숙으로 인한 실수로 A씨의 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 감사 문서가 공개 됐다”며 “현장조사에서 최근 3년 이내 감사 결과 처분 및 징계의결 등 일부 문서가 공개처리된 것이 확인돼 모두 비공개로

시정조치 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감사 진행 중 일부 문서를 직원들이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고, 감사 문서가 모두 대국민 공개로 처리된 상황에서 만일 A씨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정보공개를 통해 해당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시설관리공단 측의 부주의 때문에 감사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문서 공개 및 열람 가능 조치로 인해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낙인이 찍혔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누가 그랬나? 길고양이 32마리 집단 폐사

완도경찰, 수사 나서

완도에서 길고양이 30여 마리가 연이어 폐사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완도군 완도를 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 산책로에서 모두 32마리의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

됐다.

고양이 사체는 산책로에 마련된 급식소 4곳에서 총 9차례에 걸쳐 발견됐다.

10여년간 이 곳 산책로에서 고양이 밥을 행겨왔던 일명 ‘갯맘’이 고양이 사체를 발견해 이탈 초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신고자는 “고양이 사체를 발견할 당시 하반신 마비와 구토한 흔적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길고양이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사체 2구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한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용의자 특정을 위해 CCTV와 블랙박스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비정상적 거래 알고도 계좌 명의 빌려주면 과실”

광주지법 “30% 과실 책임”

비정상적인 거래인줄 알면서도 계좌명의를 빌려주면 3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박민우)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명의 대여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3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보고 21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께 자기 딸로 속인 메신저 피싱범의 문자를 받고 B씨의 계좌로 700만원을 이체했다. 당시 신용 불량자였던 B씨는 모 저축은행 상담사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범에게 속아 명의대여자가 됐다.

B씨는 “신용카드도 현금서비스를 받고 다른사람이 대신 상환을 반복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

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는 메신저 피싱범의 안내에 따라 카드로 300여만원을 대출받고 가상계좌를 만들어 메신저 피싱범이 지정한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이다.

A씨는 속았다는 것을 알고 신고를 했지만 이미 송금한 700만원은 B씨의 계좌를 통해 메신저 피싱범의 계좌로 이체된 후였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돈이 B씨에게 실질적으로 가지 않았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사기범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과실로 사기범행에 방조한 책임이 있고 A씨도 경솔하게 신분증을 제공한 점을 고려해 B씨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